

보관증			
면허(허가) 받은 자 또는 등록·신고 한 자	① 성명	② 직업	
	③ 주소		
④ 어업(어획물운반업)·양식업의 면허·허가·등록 또는 신고번호			
⑤ 보관 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면허증 <input type="checkbox"/> 허가증 <input type="checkbox"/> 어업신고증명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어획물운반업등록증 <input type="checkbox"/> 선박국적증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선적증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필증 <input type="checkbox"/> 해기사면허증		
<p>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서류를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어업감독공무원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소속 직급 성명 (인)</p>			
<p>※ 알림</p> <p>1.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어업면허증등이 압류된 경우에는 이 보관증을 비치·휴대하고, 행정기관·어업감독공무원 등이 요구하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2. 이 보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일시·장소 및 경위를 어업감독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신고하여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			